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특별공급 청약안내

모종 RicheVille 리슈빌 The SKY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관심고객을 위한 안내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를 적용합니다.
※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청약자격 및 요건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특별공급은 청약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청약자격	주택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				
청약자격	기본자격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태아 및 입양포함)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청약자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의 경우 청약통장 필요없음				
전용면적		85㎡ 이하		전평형	85㎡ 이하	전평형
예비입주자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기타		**※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 한정**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공급)**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봅니다.(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분양권 등도 주택소유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또는 청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 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특별공급 특례)**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원 전체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청약 신청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과거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봄)**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청약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견본주택 내방 전 방문예약 필수) • 인터넷 청약(청약홈)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 무주택기간 등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자녀)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청약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에서 세대원의 범위 확대로 세대주의 '동거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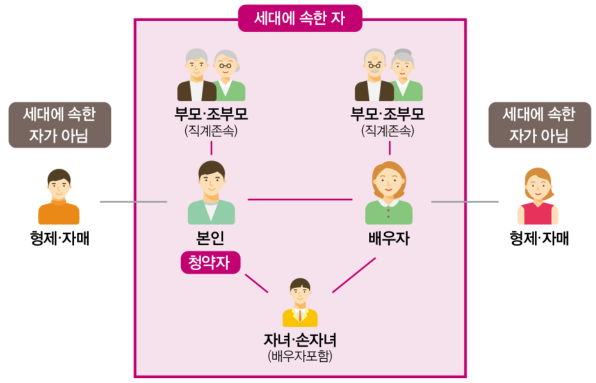

시행수탁사 KB부동산신탁 시행위탁사 (주)다온도시개발 시공사 동성건설